



# 사슴 자가도축 허용지역 확대 추진

- 자가소비에 국한, 법 시행에 따른 융통성 확보 -

농장 내에서의 사슴 자가도축을 합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확대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본회는 지난 11월 15일 농림부에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의견을 제출하면서 행정경로를 통한 자가도살 허용지역 확대지정 고시 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 12월 3일 전국 각 도 및 광역시장에게 공문을 보내 가축 의무도축 확대시행에 따른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슴사육 농가의 경영안정 및 농가소득 유지를 위해 사슴에 대한 자가도살 허용지역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시 지역별 구성된 본회 지회조직 및 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임원 및 지회현황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가 가장 먼저 사슴을 포함한 8개 추가 축종에 대한 자가도살 허용지역 지정 확대

방침을 정하고, 10일 본회 임원 및 지회장 8명과 각 시군 축정관계자들을 소집,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본회 임원들은 사슴의 생리적 특성과 사슴도축 시설을 갖춘 도축장이 거의 없음을 들어 의무도축 대상 포함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또 양육농가의 경영손실을 막기 위해 자가도살 허용지역을 대폭 확대,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 전북도, 20일까지 지정고시 방침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자가소비용 가축의 자가도살지역 확대지정은 취지상 중탕가공 등을 제외한 자가소비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으나, 시군의 의견을 들어 20일까지 지정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슴의 경우 정식 도축장이 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법 시행 후에도 융통성 있는 지도단속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또 일선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임원은 “도축장 운영자 대표도 회의에 참석했는데, 사슴도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시설을 별도로 갖출 계

획도 전혀 없다며 법 시행의 무리함을 신랄히 지적했다.”고 전했다. 전라북도가 마련한 자가소비도살 허용지역 지정 계획(안)은 아래와 같다.

### ■ 자가소비도살 허용지역 지정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정식 도축장 도축대상 추가가축 8종에 대하여 도서·벽지 또는 도축장 이용이 심히 불편한 지역은 자가도살 허용 지역으로 신규지정 고시하여 식육의 유통을 원활히 함.

#### • 배경

- 축산물가공처리법 부칙 제 2조(적용특례), 동법 시행령 부칙 제 1조(시행일) 단서규정 및 제 2조(적용특례)에 의거, 그간 법 적용이 유예되었던 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토끼·메추리 및 꿩(8종)에 대하여 2003. 1. 1일부터 법 적용을 받아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함에 따라 자가도살 허용지역을 지정하여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 • 현황

- 현행 적용가축 : 소, 돼지, 양(염소포함), 닭(고시지역)
- 돼지·양(염소포함) 자가도살 허용지역 : 13개 시·군 402개 리
- 수축(닭)의 법 적용지역 : 7개 시·군 111개 동 30개 리
- 8개 축종 사육현황(2002. 6월말 기준)

구 분	계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토끼	메추리	꿩
농가구(호)	12,026	888	7,428	1,191	127	112	2,253	6	21
사육두수(천두)	31,300	10	29,770	1,220	1	10	49	183	57

#### • 추진 계획

- 돼지·양(염소포함) 자가도살 허용지역 재 조정
- 8개 축종에 대한 자가도살 허용지역 지정 고시
  1. 법적 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조
  2. 지정 고시 : 2002. 12. 20 이전(시행 : 2003. 1. 1)
  3. 지정대상



가. 적용지역 : 도서·벽지 또는 도축장 이용이 심히 불편한 지역

나. 제외지역

- 전주시 전지역
- 군산, 익산, 남원, 김제시의 읍·동 지역 및 기타 군 소재지, 읍 소재지
- 아파트촌 등 인구 밀집지역
- 국립공원 및 도·시·군립공원 주변지역

다. 위 제외지역 외의 지역 중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지정고시

· 수축(닭)법 적용지역 폐지 : 2002. 12. 31

• 조치사항

· 시·군 : 자가도살 허용지역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02. 12. 14(토)

- 제출서식

- 8개축종(닭·오리·사슴·거위·칠면조·토끼·메추리·꿩)

시군별	읍면별	총리수	허용리수	허용지역(리명)

· 관련단체

- 회원에 대한 지도·홍보 등 실시

한편, 본회는 전라북도 외에도 전국 지역단위로 도청 및 군청과 자가도살 허용지역 확대지정 고시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전 임원 및 지회장에게 독려하는 한편, 현황을 수시 점검하여 제외되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추진상황 등이 제때 전달되지 않음은 물론, 농가를 대표해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강원도의 경우 본회 임원 및 지회장을 통한 의견수렴이 적극 추진되어 예외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자가도살 허용지역으로 고시될 전망이다. 또한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광역 자치단체가 자가소비도살 허용 지역 확대지정을 검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20일 개최되는 충남지역 지회장 회의시 정식 의견을 모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자가소비도살 허용지역 확대지정 안전을 놓고 관련공무원과 회의중인 본회 임원들

전남, 경남, 경기, 충북 등도 도 단위의 방침결정과 시 군 단위별 의견수렴을 벌이고 있어 일단 전국(예외지역 제외)이 자가도살 허용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 자가소비 인정범위 확대 등 요구

이렇게 되면 농가에서의 사슴 도축 및 이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순수한 자가소비용 도축과 둘째는 중탕가공용 도축인데, 둘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가도축에 의할 수 없다는 것이 일선 행정기관의 시각임을 유의해야 한다. 물론 본회는 자가소비의 범위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 및 자가소비 개념의 확대적용을 건의할 계획이다. 일단 현재로서는 가공판매 목적의 도축은 도축단위가 1두 정도라 할지라도 정식도축만이 원칙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중탕 등 판매농가는 정식도축 입증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회는 이러한 방안으로 농가의 자가도축을 최소한 보장받도록 하는 것과는 별개로, 내년 상반기 예정인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시 자가소비용이 아닌 자가가공(중탕)용도에 대해서도 자가도축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국양**